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1) **(이용인원 및 정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9.>
 - ① 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인 자 혹은 65세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이용정원
 - ㉠ 주야간보호급여 : 35명
 - ㉡ 방문요양급여 : 제한없음
- 2)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이용자를 파악한다.
 - ② 공단 블로그 및 센터 블로그를 통하여 홍보하고 유선 및 방문상담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 ③ 기관차량에 상호를 부착하여 홍보모집한다.

2. 이용계약

- 1)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2) **(계약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
-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 4)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① **월이용료** <개정 2023. 1. 1.>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종별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으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주야간	3시간 이상	36,95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64,400	59,60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②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공통사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보호 급여

- 식대비 : 1식사당 3,800원 <개정 2023. 1. 1.>
- 간식비 : 1일(2회)당 1,000원
- 특정 수급자에게만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된 비용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기존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㉔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관련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용횟수 및 시간을 변경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제도의 변동(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등)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일전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② 서비스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③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압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 및 환경관리	송영서비스,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정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 ②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비용의 부담)

- ①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을 통보하여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수급자 및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시 센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센터는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②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을 계약자로 한다.
- ③센터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급여제공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중에 수급자의 신체적/물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면책범위) 아래와 같은 사유는 면책사유가 된다.

- 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제공자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없이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급여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